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2020. 12.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182
----------	--------

2020. 12. 7.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
- 나. 제 안 일 : 2020. 11. 13.
- 다. 회 부 일 : 2020. 11. 13.

2. 제출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2020. 4. 8.)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안 제6조)
-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용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0. 10. 15.~ 11. 4.(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3) 규제개혁심의위원회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안 제6조는 2020년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4. 8.)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기존 열거주의¹⁾ 방식에서 포괄주의²⁾ 방식으로 전환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확대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구조적 정합성을 이루었음.
- 개정 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재난관리업무에 지장이 없고,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기금의 수입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사용용도를 침수방지사설 등과 같은 재난응급복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난 4월2일 신설된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 사항을 확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운용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개정된

1) 열거주의(Positive System) :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

2) 포괄주의(negative system) :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나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제

조례 사항에 적극적 행정행위일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 규정에 따른 ‘침수주택 및 저지대 침수우려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인 물막이판, 역지변 사업’ 이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음.

[표.1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금액	금액	금액
합계		129,540	185,000	545,983
제 6 조 관 련	제1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2호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3호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제4호 재난관련 장비 구입			65,035
	제5호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			
	제6호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제7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보수·보강			
	제8호 수해·강풍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7,800
	제9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제10호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35,000	23,008
	제11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12호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29,400	150,000	450,000
	제1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0		140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